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연호고가교)

제5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1 종합평가

5.2 안전등급 지정

제5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1 종합평가

5.1.1 개요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각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가. 정밀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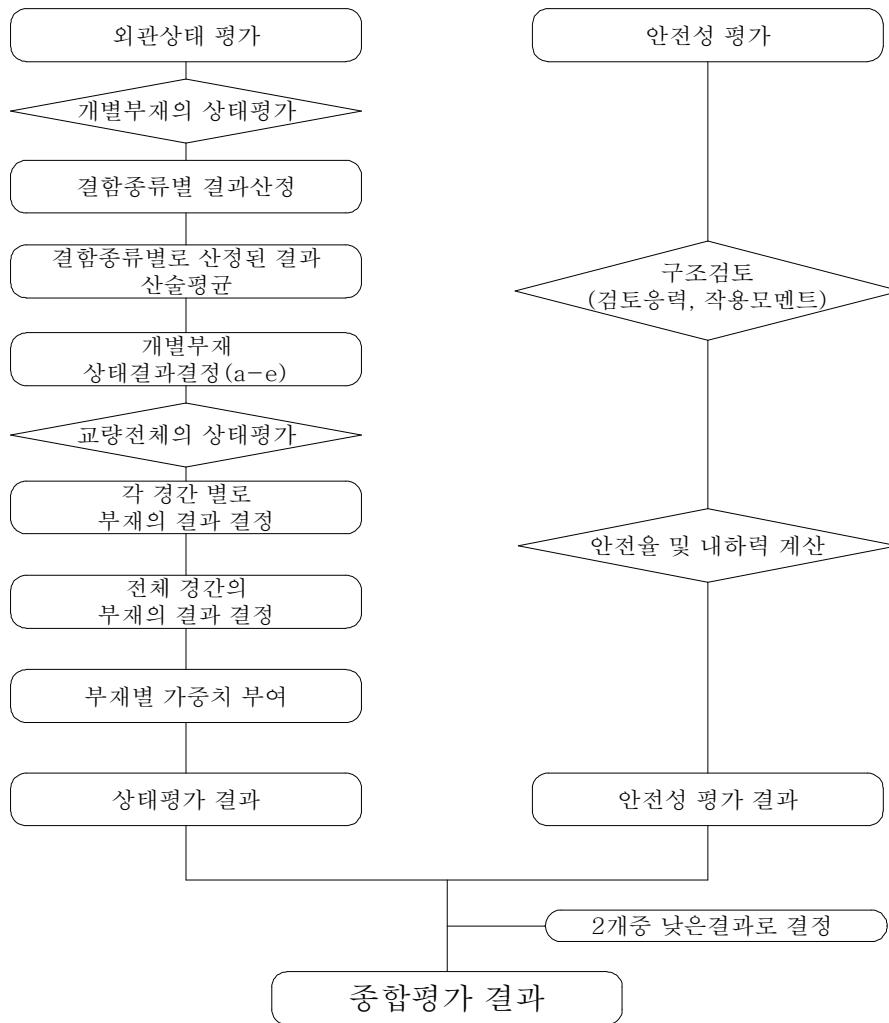
정밀점검 시 안정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상태평가 만을 수행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하며, 안전성평가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중 낮은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 검토에 근거한 안전성평가 결과 중 낮은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 종합평가 등급 = MIN (상태평가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5.1.2 종합평가 흐름도



<그림 5.1.1> 종합평가 결과의 산정흐름도

5.1.3 종합평가 결과 산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평가구분	결함점수 및 안전율	평가결과
상태평가	0.152(B)	B

○ 종합평가 결과: 『 B 』 (상태평가 결과: B)

상태평가 결과B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결과B

5.2 안전등급 지정

5.2.1 개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제10조의 2 및 「영」제11조의 5에 따라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5.2.2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표 5.2.1>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5.2.3 안전등급 지정

종합평가에 의한 안전등급 산정 결과,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양호)』로 지정하였다.

